

##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사례 연구

이지은(Jieun Lee)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Jieun Lee (2015), A survey-based study of police interpreting practice and police officers' perspectives on police interpreting:**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who do not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host country, are entitled to free assistance by interpreters under international laws. Provision of interpreting by competent interpreters is crucial to due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legal rights of people from non-Korean speaking backgrounds in the criminal procedure. With the rising demand for interpreting, interpreting has increasingly become a common practice in South Korean police setting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current practice with respect to police interpreting. This case study seeks to examine the current practice of poli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and police officers' perspectives on police interpreting based on a questionnaire-based survey of twenty seven police officers. Police usually requests interpreting services from those who have agreed to serve as interpreters in local areas, but also turns to any bilinguals when there is a problem with finding available interpreters. The interpreters who offer police interpreting include non-professionals and volunteer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police lacks understanding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engaging people, who hav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co-offenders, acquaintances and police investigators. Such practices cast doubt on the quality of police interpreting although a half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trust the quality of police interpreting. Furthermore, the remuneration for police interpreting is very low, which may fail to attract competent interpreters in this field. Police interpreting occurs both on site and on telephone to a lesser degree.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some areas in which the South Korean police needs to adopt good practice and internationally accepted norms in police interpreting.*(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Keywords:** police interpreting, police officers, survey, current practice, perception

## 1. 서론

사법통역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한국어 구사력과 이해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법률적 권리 및 사법 서비스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법통역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과 직결된다. 형사, 민사, 가사 등 사법 전반에 걸쳐 변호인 접견 및 법률 상담, 출입국 심사, 수사 과정을 포함하여 재판 이후 과정에까지 해당하는 광범위한 사법절차와 관련된 통역을 포괄적으로 사법통역이라 칭한다. 본고의 논의는 경찰통역에 한정되는 관계로 ‘경찰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제화와 함께 외국인 방문객과 체류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법기관과 다양한 언어·문화권 출신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수요도 증가하였다(이지은 2012). 외국인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기관은 통역인 확보를 위하여 왔고 전국 법원과 경찰, 검찰에 등록된 통역인 숫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이지은 외 2013). 경찰청 외사과 제공 2012년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경찰에 등록된 통역인은 36개 언어의 총 3,820명이다. 이 중 경찰관은 763명, 민간인 3,057명이며, 중국어 통역인 숫자가 710명으로 가장 많다. 영어 통역인은 519명, 일본어는 413명이다.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것 같으나 경찰통역인 중에 전문 통역기술을 갖추고 사법통역의 특수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은 통역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는 비단 경찰통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내 경찰통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매우 미진하며 그동안 사법통역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법정통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몇 가지 선행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김진아 외(2008)는 법원 관계자 41명과 통역인 54명을 대상으로 법정통역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법원 통번역인 선정 기준, 재판 과정에 통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업무 의뢰 시기와 자료 송부 등 실무 절차, 법원 통번역인 처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통역사 인증제도 도입과 사법통역 교육을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지은(2012)은 연구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관, 통역인 등을 포함한 총 155명을 대상으로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경찰, 검찰을 포함한 법조인(사법인)들과 통역인의 인식과 사법통역제도 개선책에 대해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경찰 참가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단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루어져 경찰의 의견을 반영한

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 단계보다는 주로 법정통역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법관과 재판부 참여행정관, 법원등록 통역인 등 총 2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한 실증연구와 문헌연구를 수행한 이지은 외(2013)는 법원통역 중심의 사법통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로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통역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경찰통역이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사법통역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 외 담화연구 중심의 사법통역연구(이지은 2012; Lee 2014a, 2015 등)는 국내 형사, 민사, 행정 소송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자료를 기초로 통역인과 사법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통역기술 부족에 기인한 통역 행위와 재판 절차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주로 법정통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외국인을 위한 검찰 수사 공판서류의 영어 및 일어 번역 및 통역 실태 조사 연구인 김한식 외(2008) 역시 연구 범위가 검찰 통번역에 제한되어 경찰통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검찰 수사통역에 대한 연구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관심 부족으로 매우 미진하다. 이상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사법통역제도의 개선책으로 사법통역 전문인력 교육과 자격검증, 통역 품질 모니터링, 사법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법통역의 품질 향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통역인의 자격요건 강화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법통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경찰행정 및 법전문가들도 효율적인 외국인 사건 처리를 위해 외사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통역인 확보가 시급함을 지적하는 등 통역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운곤 2001; 임장호 2008; 양문승, 나유인 2009; 권오희 2010; 박진희 2012).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화 심화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경찰 외사 업무 및 경찰 행정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경찰통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다. 외국인 피고인들이나 범죄 피해자들의 통역에 대한 불만 내지 불신이 제기된 사례는 일화적 증거 수준에 머무르며, 실제 경찰통역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해외에서도 경찰통역 실증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제까지 해외 통역학자들에 의한 경찰통역 연구는 경찰 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등 통역발화의 화용적 의미상 정확성과 법률적 측면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Krouglov 1999; Russell 2001, 2002; Berk-Seligson 2000, 2009; Nakane 2007, 2014). 통역을 매개로 한 경찰신문에서 통역사의 개입이 수사면담기법에 미치는 영향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Lai and Mulayim(2013)도 통역사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경찰통역은 다른 사법통역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통역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통역기술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해 경찰통역이 이루어지면 검찰수사 및 재판 단계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당사자의 권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문 통역사가 아닌 아마추어 내지 비전문가들은 어휘나 문법 지식을 포함한 이중언어 구사능력과 통역기술이 부족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감 편집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윤리의식이 부족하여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 보조자 역할을 한다든지, 역으로 외국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편을 들어 편파적인 통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소수 언어 통역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출신 경찰통역요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지은 2014b)는 통역 교육을 받은 민간인 경찰통역요원이 소수이고, 경찰 통역인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과 정확성에 대한 이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고 통역인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사법통역 전반에 걸쳐 통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통역인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부족하여 통역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사법통역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이지은 2011, 2013).

특히 사법통역은 다른 커뮤니티 통역 상황에 비해 통역인의 역할이 제한되고 엄정하게 중립적이고 정확한 통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 받는 분야인 만큼 올바른 원칙을 수립하고, 모범적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찰 통역인의 인식과 비교 대상으로서 경찰관의 통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개선점은 없는지 파악함으로써 경찰통역제도의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설문 조사

2013년 7월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에서 경찰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사법통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3일 단기 교육을 행정안전부 위탁교육과정으로 운영한 바 있다. 본 교육에 앞서 교육 대상자인 경찰관들의 인식과 통역인 선정을 포함하여 통역인 활용 실태에 관한 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탁교육 내용에 반영하였다. 위탁교육 대상자들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추천, 선발된 경찰관들로 지

역적 대표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통역을 자주 접하는 전현직 의사 담당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현재 경찰의 통역 관행 및 이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본고는 경찰통역 수요자 내지 서비스 이용자라 할 수 있는 경찰 위탁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경찰통역 관행과 경찰통역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 제안하고자 한다.

전체 교육생 30명 가운데 27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총 42개의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위탁교육 대상자인 경찰관들의 성별, 연령, 직급과 경력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사법통역 경험과 빈도, 통역인 선정 기준 등 경찰의 사법통역인 활용 실태와 사법 통역인의 역할과 규범, 통역인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하 소절에서는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성별, 연령, 직급, 경찰경력과 관련된 인적 사항을 다룬 다음 이들의 외국인 사건 및 통역 활용 경험, 통역인 선정 및 활용 기준, 그리고 경찰통역에 대한 인식 등을 차례로 다룬다.

### 2.1. 인적 사항

설문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16명(61.5%), 여자가 10명(38.5%)이었다. 1명은 성별 표기를 하지 않아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모든 응답률은 무응답자를 뺀 응답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1을 제외하고는 설문 조사 결과 파악이 용이하도록 응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부터 낮은 문항 순서대로 표에 제시하였다.

표 1. 연령

연령	응답(N=27)
30세 이하	3.7%(1)
31~35세	37.0%(10)
36~40세	33.3%(9)
41~45세	18.5%(5)
46~50세	7.4%(2)
51세 이상	0

연령별로 보면 응답자들의 연령은 31~35세가 37%로 가장 많았고, 36~40세가 33.3%, 41~45세가 18.5%, 46~50세가 7.4%, 30세 이하가 3.7%였다. 전체 교육 대상 경찰관 가운데 30대가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표 2. 직급

직급	응답(N=27)
경사	50.0%(13)
경장	26.9%(7)
경감 이상	15.4%(4)
경위	7.7%(2)

응답자들의 직급은 경사가 50%로 가장 많았고, 경장이 26.9%, 경감 이상이 15.4%, 경위가 7.7%였다. 순경은 한 명도 없었다.

표 3. 경찰 경력

경찰 경력	응답(N=26)
2~5년	32.0%(8)
6~10년	28.0%(7)
11~15년	28.0%(7)
16년 이상	12%(3)

응답자들의 경찰 경력은 2~5년이 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10년과 11~15년이 각각 28%, 16년 이상이 12%였다. 1년 이하 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연구 대상자인 경찰관들은 40세 이하의 간부급으로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 경찰행정과 정책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경찰통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 2.2. 외국인 사건 및 통역 활용 경험

2.2.에서는 경찰통역 실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외국인 사건 처리 및 통역인 활용 경험, 통역 방식, 통역인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4. 외국인 사건 처리 경험

외국인 사건 처리 경험	응답(N=29)
총 10건 이하	27.6%(8)
총 11~50건	24.1%(7)
총 51~100건	24.1%(7)
없다	13.8%(4)
총 100건 이상	10.3%(3)

예상대로 대다수(86.2%)의 응답자가 외국인 사건 처리 경험이 있었다. 총 10건 이하의 처리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6%, 총 11~50건과 51~100건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24.1%였다. 총 100건 이상의 외국인 사건을 처리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10.3%였다. 반면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3.8% 있었지만 이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외국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빈도 면에서 연간 외국인 사건 처리 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는 15명으로 응답자의 70.5%를 차지하였고, 51~70건을 처리하는 응답자가 19%, 연간 70건 이상 처리하는 응답자도 9.5%였다.

표 5. 통역인 활용 경험

통역인 활용 경험	응답(N=26)
있다	80.8%(21)
없다	19.2%(5)

설문 조사에 참가한 경찰관 가운데 대다수(80.8%)가 통역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고, 19.2%는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대략적인 통역인 활용 건수는 응답자 22명 가운데 연간 5건 이하가 가장 많은 31.8%를 차지하였고, 연간 20건 이하가 27.3%, 21~50건이 31.9%, 51건 이상이 각각 9.1%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통역 활용 경험과 빈도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연간 21건 이상 통역인을 접하는 경찰관이 응답자 가운데 40%를 넘는다는 것은 외국인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찰통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원칙 정립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표 6. 외국인 사건 통역인 활용 기준

외국인 사건 통역인 활용	응답(N=27)
항상 통역인을 부른다.	51.9%(14)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언어는 통역인을 부른다.	25.9%(7)
상황에 따라 다르다.	14.8%(4)
한국말로 진행하다 필요할 때 통역인을 부른다.	7.4%(4)

외국인 사건 처리 시 통역인을 활용하는 기준에 대해 외국인 사건의 경우에는 항상 통역인을 부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51.9%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35.9%)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언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역인을 부른다고 답하였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 응답자가 14.8%, 한국말로 진행하다 필요할 때 통역인을 부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7.4%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경찰 내부적으로 통역인 활용에 대한 기준이 원칙이나 정책적으로 확립된 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상 통역인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외국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이 가장 많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일단 진행하다가 통역인이 필요할 경우 통역인을 부른다는 답변도 많았다. 일관된 통역 제공 원칙을 경찰 내부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7. 주로 이용하는 통역 방법

통역 방법	응답(N=27)
경찰서 통역	70.4%(19)
전화 통역	14.8%(4)
사건 현장 통역	14.8%(4)

경찰통역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이용하는 통역 방법에 대한 질문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서에 통역인이 와서 통역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통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70.4%, 전화 통역과 사건 현장 통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14.8%였다. 전화 통역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티티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2014년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로 통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BBB, 피키편을 통한 전화 통역을 이용하고 있다.<sup>1</sup> 그렇지만 전화 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통역인들 상당수가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는 점이 통역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이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설 서비스는 외국인의 한국 관광이나 방문 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기 위한 단순한 서비스 성격이 강해 긴박하거나 중대한 순간에 경찰이 양질의 통역을 제공받기 어렵다. 언제 전화 통역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술조서 작성이 아닌 경우에 전화 통역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다. 현장에 올 수 있는 통역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전화 통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1.8%였다. 또한 매우 이른 시간이거나 매우 늦은 시간에 전화 통역을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3.6% 있었다.

<sup>1</sup> 티티콜은 한국을 여행중인 외국인에게 3자 통화 형식으로 무료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전화 서비스이고, 피키편은 전화 외국어 교육과 택시승객에게 전화 통역을 제공하는 사설기관 서비스이다. BBB코리아는 언어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외국인 방문객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비영리단체이다.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생활안내에서부터 상담 및 범죄피해 이주여성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법무부 주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재한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용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이다(이지는 외 2014 참조).

표 8. 주로 활용하는 통역인

통역인 유형	응답(N=27)
등록 통역인	77.8%(21)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14.8%(4)
경찰 내부 인력	3.7%(1)
기타	3.7%(1)

경찰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또는 타기관 추천 방식으로 민간인 통역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은 2014b: 160). 본 조사에서 주로 어떤 통역인을 활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8%가 지방경찰청 통역인 명단에 등록된 통역인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4.8%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용한다고 답하였고, 경찰 내부 인력과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7%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경찰 통역인 명단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확보하여 등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통역 인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표 9. 통역인 선정 기준

통역인 우선 선정 기준	응답(N=63)
가용성	23.8%(15)
통역 기술	23.8%(15)
경찰통역 경력	22.2%(14)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19.1%(12)
성실성	11.1%(7)

현재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역인을 모집, 선정한다(이지은 2014b: 160). 본 설문 조사 결과, 경찰의 통역인 선정 기준으로 통역인의 기술과 가용성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쓸 수 있는 통역인과 통역 기술이 있는 통역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각각 23.8%였다. 그 다음

으로 22.2%의 응답자가 경찰통역 경력을 우선 선정한다고 답하였고, 19.1%는 수사에 협조적인 통역인을 우선 선정한다고 답하였다. 성실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답을 선택한 경찰관은 11.1%였다. 통역 기술과 중립성을 갖춘 통역인도 필요하지만 일선 경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간에 경찰서에 와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한 통역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와 경찰관들이 뜻하는 성실성이 어떤 의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윤리적 중립보다 수사관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우선시할 때 사법통역의 윤리적 원칙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표 10. 통역인들의 전반적인 통역 기술 수준 평가

통역 기술 수준	응답(N=27)
신뢰할 만하다.	51.9%(14)
보통	40.7%(11)
매우 신뢰할 만하다.	3.7%(1)
신뢰하기 어렵다.	3.7%(1)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	0
잘 모르겠다.	0

통역인들의 전반적인 통역 기술 수준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1.9%,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0.7%였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와 '신뢰하기 어렵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3.7%였다.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중언어능력과 무관한 직관적인 평가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통역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지 물었을 때 순조로운 신문 진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응답자가 16명(64%)으로 가장 많았다. 통역인의 경력을 선택한 응답자가 24.0%, 발음 등 유창성이 12%였다. 해외체류 경험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표 11. 직접 통역한 경험

경찰관으로서 직접 통역한 경험	응답(N=27)
없다.	66.7%(18)
있다.	33.3%(9)

설문 조사에 참가한 경찰관 가운데 외국어 특기자로 채용된 응답자가 7명이었다. 경찰관으로서 직접 통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찰관은 모두 9명(33.3%)이었다. 나머지 66.7%의 경찰관은 직접 통역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표 12. 통역 수행 시 본인의 역할

통역 수행 시 본인의 역할	응답(N=10)
통역인	50.0%(5)
수사관	20.0%(2)
수사관과 통역인 겸함	10.0%(1)
기타	20.0%(2)

경찰관이 통역인과 수사 주체로 역할을 겸하는지에 관해 알기 위해 경찰관으로서 직접 통역할 때 본인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통역인의 역할을 했다’는 응답이 50%, ‘수사관 역할을 했다’는 답과 기타 응답이 각각 20%, ‘수사관과 통역인을 겸했다’는 응답이 10%였다. 비록 소수의 응답이기는 하나 통역인과 수사관의 역할을 겸하는 것은 중립성을 지키고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해야 한다는 통역 규범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수사관이 통역을 겸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Berk-Seligson 2009 참조).

### 2.3. 외국인 사건 처리 애로 사항 및 녹음·녹화 관행

2.3.에서는 경찰통역 관행과 애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룬다.

표 13. 외국인 사건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국인 사건 의사소통의 어려움	응답(N=26)
가끔 겪는다.	46.2%(12)
자주 겪는다.	30.8%(8)
매번 겪는다.	11.5%(3)
어려움 없다.	11.5%(3)

외국인 사건 처리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빈도에 대해서는 46.2%가 ‘가끔 겪는다’고 답하였고, 30.8%가 ‘자주 겪는다’고 답하였다. 한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와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경우가 동일하게 각각 11.5%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들이 외국인 사건 처리에 애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외국인 사건 애로 사항

애로 사항	응답(N=21)
통역인 부족	47.6%(10)
문화와 법률 차이 등으로 인한 소통 장애	38.1%(8)
통역인의 통역 기술 부족	4.8%(1)
통역인의 도덕성 불신	4.8%(1)
기타	4.8%(1)

외국인 사건 처리 시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통역인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7.6%의 응답자가 이 답을 선택하여 통역인 확보가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법관, 변호사, 검사 등을 포함한 사법인들도 통역인 확보를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은 바 있다(이지은 2012: 76). 다양한 언어의 사법통역인 양성 및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38.1%의 응답자가 ‘문화와 법률 차이 등으로 통역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답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응답률이 낮기는 하지만 '통역인이 통역을 잘 못해서', '통역인의 도덕성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타 등의 응답이 각각 4.8%였다. 이는 통역인 확보와 통역인의 자질 향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응답자 상당수가 통역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한 만큼 법제도와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한국 경찰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함을 가리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통역 제공

외국인 피의자와 참고인 통역 제공	응답(N=27)
피의자와 참고인 구분 없이 통역 제공한다.	85.2%(23)
피의자만 통역 제공한다.	11.1%(3)
기타	3.7%(1)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통역인의 무료 조력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는 있지만(이지은 2012: 15), 피해자나 증인을 포함한 참고인에 대해서도 통역 제공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범죄의 피해자든지 가해자이든지 신분에 관계 없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통역 제공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사가 원활 구분 없이 '모두 통역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85.2%로 가장 많았지만 '피의자에게만 통역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1.1%였다. 범죄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통역 제공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sup>2</sup>

<sup>2</sup> 아직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백민경 2011),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 통역 기술이 부족한 지인이 통역을 하여 합의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재판 단계에서 드러난 적도 있다(박성민, 박승현 2012).

표 16.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과정 녹음·녹화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과정 녹음·녹화	응답(N=27)
거의 하지 않는다.	37.0%(10)
간혹 한다.	33.3%(9)
매번 한다.	14.8%(4)
기타	11.11%(3)
자주 한다.	3.7%(1)

경찰 진술조서와 신문조서가 외국인이 통역을 거쳐 진술한 경우에도 한국어로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원진술이 정확하게 통역되었는지의 여부는 녹음녹화물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검증·확인할 길이 없다. 수사기관 영상녹화만으로 적정 절차가 보장되고 정확한 조서내용 기재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통역인을 통하여 신문하였다면 신문내용을 녹음·녹화하여 사후에 검증·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이지은 2012; 이지은 외 2013 참조).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의 녹음·녹화 관행은 예외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거의 녹음·녹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3.3%가 '간혹 한다', 14.8%가 '매번 한다'고 답하였다. '자주 한다'는 대답은 3.7%에 불과했다.

외국인 사건의 경우 주로 통역을 거쳐 진술을 받기 때문에 진술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녹음과 녹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녹음 및 녹화가 정례화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17.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녹음·녹화 기피 이유

녹음·녹화 기피 이유	응답(N=22)
경찰의 의무사항 아니다.	50.0%(11)
기타	18.2%(4)
번거롭다.	13.6%(3)
관행이다.	13.6%(3)
비용이 발생한다.	4.6%(1)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녹음 또는 녹화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응답자의 절반이 녹음·녹화가 의무사항이 아닌 이유를 꼽았다. ‘관행상’ 하지 않는다는 답과 ‘번거롭다’는 답이 공히 13.6%였다. 비용 발생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4.6%였다.

표 18. 외국인 사건 진술조서 작성 과정 녹음·녹화 이유

녹음·녹화 이유	응답(N=20)
중요한 사건 선별	50.0%(10)
진술 확인에 필요	25.0%(5)
기타	15.0%(3)
피의자 권리를 위한 권고 사항	10.0%(2)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는 중요한 사건만 선별적으로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인 10명이 녹음·녹화 이유를 주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진술 확인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5%, 기타 응답이 15%, 피의자 권리를 위한 권고 사항이라는 응답자가 10%였다. 가능하면 녹음·녹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변호인 또는 법원의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진정성이나 통역의 정확성을 다룰 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녹음·녹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어 단일어로 기재된 조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과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가 추후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이지은 2012: 77, 199)에서도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사법인들이 외국인 사건 처리 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외국인 진술과 통역된 내용을 비교 확인 가능하도록 진술 녹음 및 녹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 2.4. 사법통역(규범)에 대한 인식 및 관행

정확성, 독립성, 기밀 유지 등을 포함한 사법통역의 핵심 규범과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통역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에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법경찰관의 사법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 사법통역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문 조사 문항에 포함시켜 경찰관들이 바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밖에서 서비스 이용자 시각에서 본 사법통역 시 어려운 점, 통역인 보수 수준 등의 통역 관련 문항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표 19. 통역인이 피의자/참고인과 아는 사이일 때 대처

통역인이 피의자/참고인과 아는 사이일 때	응답(N=27)
가급적 다른 통역인으로 교체한다.	63.0%(17)
주의사항을 말해 주고 통역시킨다.	37.0%(10)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통역시킨다.	0

독립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통역에서 지인이나 친구, 가족 등에 의한 통역은 지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인이 피의자 혹은 참고인과 아는 사이일 때 가급적 다른 통역인으로 교체한다고 전체 응답자의 63%가 답했고, 37%는 주의사항을 말해 주고 통역시킨다고 하였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없었지만 주의 사항을 말해 주고 그냥 통역시킨다는 답도 37%나 되는 점을 볼 때 통역인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통역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 언어의 경우에는 지인을 배제함으로써 수사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 언어 통역인 확보와 양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0. 통역 기피 인물

통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응답(N=118)
당사자 가족	21.2%(25)
당사자 친구	20.3%(24)
공범	20.3%(24)
유치장에 있던 다른 사건 피의자	15.3%(18)
경찰관	9.3%(11)
전과자	7.6%(9)
통역 무경험자	5.9%(7)
학생	0

위의 통역인 중립성 확보 문제와 상통하는 문제로 설문 조사 참가자들에게 통역인으로서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예를 제시한 후 통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가족을 선택한 경찰관 응답자가 21.2%, 당사자의 친구와 공범이 각각 20.3%였다. 유치장에 있던 다른 사건 피의자가 15.3%, 경찰관이 9.3%, 전과자가 7.6%, 통역 무경험자가 5.9%였다. 학생을 고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관이 통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11명(9.3%)이 있어서 이해 상충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지만, 예로 제시된 항목 대부분은 통역인의 중립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공범이나 피의자,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는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기 어렵고,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통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통역이 아마추어 통역에 의존하는 실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사법 통역인의 주된 역할

사법 통역인의 주된 역할	응답(N=46)
사법기관의 보조자	39.1%(18)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32.6%(15)
외국인의 조력자	17.4%(8)
외국인의 대변자	10.9%(5)

통역인을 활용하는 수사기관에 속한 경찰관으로서 통역인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문제도 통역의 품질 및 올바른 절차적 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법통역인의 주된 역할에 대해 복수 선택을 하게 했는데 전체 응답 가운데 39.1%가 통역인을 사법기관의 보조자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32.6%의 응답은 통역인의 주된 역할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보았고, 17.4%는 외국인의 조력자, 10.9%는 외국인의 대변자라고 답하였다. 특히 사법 통역인이 사법기관의 보조자라는 인식은 통역인의 중립성과 전문성보다는 수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지은 2012: 83). 또한 통역인이 외국인의 조력자 또는 대변자의 역할을 한다고 답한 경우도 30%에 육박하여 통역인의 중립적 역할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표 22.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측면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측면	응답(N=61)
중립성	34.4%(21)
정확성	29.5%(18)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19.7%(12)
효율적인 진행	16.4%(10)

사법통역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다. 응답자의 34.4%가 '중립성'을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정확성'을 29.5%가 선택하였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19.7%, '효율적인 진행'을 16.4%가 선택하였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중요하겠지만 통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요약 통역을 허용하거나 통역인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가감 편집은 경계해야 한다.

표 23. 사법통역 시 애로 사항

사법통역 시 애로 사항	응답(N=67)
법률 용어	31.3%(21)
근무 외 시간 호출	16.4%(11)
긴 수사 시간	14.9%(10)
비표준어(사투리)	11.9%(8)
횡설수설하는 진술	10.5%(7)
낮은 보수	7.5%(5)
비속어(욕설, 은어 등)	6.0%(4)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	1.5%(1)

경찰관 시각에서 통역인들이 사법통역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일 것이라고 생각 되는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법률 용어’라고 답한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근무 외 시간 호출’을 선택한 응답이 전체의 16.4%였고, ‘긴 수사 시간’ 14.9%, ‘비표준어(사투리)’ 11.9%, ‘횡설수설하는 진술’이 10.5%였다. 그 밖에 ‘낮은 보수’를 선택한 응답자가 7.5%, ‘비속어(욕설, 은어 등)’이 6%,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꼽은 응답자가 1.5%였다. 이주여성 경찰통역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설문 조사에서도 법률 용어가 가장 어렵다고(이지은 2014: 171) 확인된 만큼 법률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를 애로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이주여성 경찰통역요원들은 7.4%가 이를 지적하여 상호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 통역인 보수 수준

통역인 보수 수준에 대한 의견	응답(N=27)
적절하다.	66.7%(18)
그저 그렇다.	14.8%(4)
낮다.	14.8%(4)

매우 낮다.	3.7%(1)
높다.	0
매우 높다.	0

법원 통역료에 비해서도 낮고, 일반적인 수행통역요율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현재 경찰통역 보수 수준을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sup>3</sup> 전체 응답자의 66.7%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그저 그렇다’와 ‘낮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14.8%, 매우 낮다고 본 의견은 3.7%에 불과했다. 현재 보수 수준을 ‘높다’거나 ‘매우 높다’고 본 응답자는 없었지만 현재 보수 수준에 대한 경찰관들의 이러한 인식은 통역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의미이다. 결국 낮은 보수로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신뢰할 만한 양질의 통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표 25. 사법통역 관행의 개선점

현재 사법통역 관행의 개선점	응답(N=55)
통역 기술 교육	34.6%(19)
통역 품질 모니터링	21.8%(12)
통역인 선발 기준 강화	20.0%(11)
보수 인상	14.6%(8)
윤리 교육	9.1%(5)

현재 사법통역 관행상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복수 선택하게 하였다. 통역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34.6%). 다음으로는 ‘통역

<sup>3</sup>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경찰청 훈령’ 제666호 제3조, 4조, 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을 근거로 통역인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주요 외국어 통역의 경우에는 시간당 3만 원, 기타 외국어(영·일·중 제외)의 경우에는 시간당 3만 5천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여기에 여비와 일당으로 2만 4천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공휴일이나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다.

품질 모니터링'이 21.8%, '통역인 선발 기준 강화'가 20.0%, '보수 인상'이 14.6%, '윤리 교육'이 9.1%였다. 앞서 설문 조사 참가자 절반 이상이 통역인들의 통역 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답하였지만, 실제 통역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술 교육과 윤리 교육을 합하면 약 44%가 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통역인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지은(2014)에서 이주여성 경찰통역요원들의 통역 기술 교육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발 기준 강화와 교육 및 품질 모니터링은 모두 통역 품질과 관련된 사항으로 품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6. 통역인의 문화적 차이 설명

통역인의 문화적 차이 설명	응답(N=27)
관련성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한다.	74.1%(20)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설명한다.	22.2%(6)
기타	3.7%(1)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0

사법 통역인의 역할은 통역인의 전문성과 중립성, 통역의 정확성과 결부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역인이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관련성이 있으면 통역인이 설명하는 것을 기대하는 편이었다. 응답자의 74.1%가 '관련성이 있으면 통역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설명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2.2%였다. 반면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법통역에서 통역인이 설명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말 것을 강조하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한국 경찰관들이 사법 통역인의 폭넓은 중재를 기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역인 및 경찰관 교육을 통해 적절한 절차와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가 올바르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표 27. 통역인이 알려줘야 할 문화적 차이

통역인이 알려줘야 할 문화적 차이	응답(N=49)
관습이나 제도 차이	40.8%(20)
문화 차이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언어 표현	34.7%(17)
문화적으로 의미가 다른 몸짓이나 표정	22.5%(11)
기타	2.0%(1)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선택한 통역인이 알려줘야 할 문화적 차이로 관습이나 제도의 차이가 1위였다. 복수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전체 응답 가운데 40.8%가 '관습이나 제도 차이'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수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언어 표현'을 선택했다(34.7%). 그 다음으로 22.5%가 '문화적 의미가 다른 몸짓이나 표정'을 선택하였으며, 기타 응답이 2%를 차지했다.

표 28. 통역인의 의견 표시

통역인의 의견 표시	응답(N=26)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 표시할 수 있다.	57.7%(15)
자유롭게 의견 표시할 수 있다.	26.9%(7)
의견 표시할 수 없다.	11.5%(3)
기타	3.9%(1)

사법 통역인은 원발화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 뿐 절대로 자신의 의견을 더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직업 윤리에 해당하며, 통역인이 원진술에 의견을 더하거나 자신의 의견임을 밝히고 제시하더라도 통역인 개인의 편견과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역인의 의견 표시에 대해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응답이 57.7%로 상당히 많았다. 또한 요청이 없어도 통역인이 '자유롭게 의견 표시할 수 있다'는 응답이 26.9%를 차지하였다.

한편 통역인은 ‘의견 표시할 수 없다’고 본 응답자는 11.5%뿐이었다. 통역 시 자신의 의견을 표하거나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법 통역인의 윤리 규범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소수인 반면 통역인이 자율적으로 또는 요청에서 의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84.6%나 되어 현재 경찰통역 관행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통역인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 주었다.

표 29. 동문서답 대처 방식

통역 시 동문서답 처리	응답(N=27)
동문서답이라도 그대로 통역한다.	59.3%(16)
통역하지 않고 질문을 다시 통역해 준다.	33.3%(9)
통역하지 않고 엉뚱한 답이라고 알려 준다.	7.4%(2)

사법통역의 정확성을 위해 동문서답이나 비논리적인 말을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찰관이 모르는 경찰관보다 더 많았다. ‘동문서답이라도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경찰관이 절반을 약간 넘는 59.3%였다. 한편 동문서답의 경우 곧바로 ‘통역하지 않고 질문을 다시 통역해준다’고 답한 응답자가 33.3%, 통역하지 않고 ‘엉뚱한 답이라고 알려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4%였다. 통역인이 즉각 통역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은 신문이나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통역의 특수성 및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표 30. 비논리/황설수설 대처 방식

통역 시 비논리 대처 방식	응답(N=26)
최대한 답변을 그대로 통역한다.	59.3%(16)
통역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물어본 후 재진술한 것을 통역한다.	25.9%(7)
뜻이 통하게 정리해서 통역한다.	14.8%(4)

통역인이 외국인 진술 시 비논리나 황설수설에 대해 ‘최대한 답변 그대로 통역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다. ‘통역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물어본 뒤 재진술한 것을 통역한다’는 응답이 25.9%, ‘뜻이 통하게 정리해서 통역한다’는 응답이 14.8%를 차지했다. 통역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물어본 후 재진술한 것을 통역한다는 응답이 약 26%였는데, 이는 통역에 의한 진술변경을 유도하거나 통역인과 외국인 간의 외국어 대화가 경찰관의 부지불식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관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신문 진행방식이다. 이 역시 경찰관에 대한 통역인의 활용 교육이 이루어져 효과적이고 적절한 통역인 매개 외국인 신문이 진행될 필요를 가리킨다.

표 31. 통역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대처 방식

통역인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대처 방식	응답(N=26)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96.2%(25)
최대한 들은 대로 통역하고 이해 못한 부분은 밝히지 않는다.	3.9%(1)

사법통역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추측하여 임의로 통역하는 것은 금물이며,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밝히고, 재확인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통역인이 원진술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96.2%). 반면 ‘최대한 들은 대로 통역하고 이해 못한 부분은 밝히지 않는다’는 응답은 소수였다(3.9%).

### 3. 결론

본고는 사법경찰관 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통역에 대한 인식을 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통역인 선정 및 활용 원칙과 통역인의 역할 등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또는 관행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참가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설문 조

사이지만 경찰통역 서비스 이용 주체의 인식을 보여 주는 가치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한 품질의 경찰통역은 형사사법절차의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수사단계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인 관계로 경찰통역은 외국인 사건에 대한 이해와 사실관계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경찰통역은 공정한 사법절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경찰통역 서비스 체제와 통역 품질, 통역인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을 요한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외사 경찰관도 필요하지만,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통역하게 될 때 수사관의 역할을 겸하여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통역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 확보도 시급하지만 우수한 통역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 통역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필수화하여 사법절차와 법률 용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법통역의 원칙과 윤리적 측면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부적절한 통역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법통역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도 교육을 장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역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만큼 경찰통역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보수 수준이 결혼이민자나 이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수입이라는 경찰 내부의 인식을 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요 외국어는 기타 언어에 비해 더 낮은 통역료를 지급하는 비합리적인 현재 통역요율체계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찰통역 인력을 유인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수사단계 통역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개선과 함께 사법경찰관들의 통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경찰의 인식이 바로 서 있어야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부적절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통역을 매개로 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통역인과 함께 일하고 통역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경찰통역인 선정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경찰통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경찰통역제도 정립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Baek, M. (2011). 외국인 범죄... 피의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 (Foreigner's Crime: only suspects, but no victims?). Seoul Sinmun, Retrieved fro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28011021> on 17 May 2013.
- Berk-Seligson, S. (2000). Interpreting for the police: Issues in pre-trial phases of the judicial process. *Forensic Linguistics* 7(2): 212-237.
- Berk-Seligson, S. (2009). *Coerced Confessions: The discourse of bilingual police interrogation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Kim, H., Joo, J., and Jeong, J. (2008). *A Study of the Current Practices of Prosecu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Trial-related documents for Foreigners*. An unpublished research report. Seoul: Supreme Prosecutors' Office.
- Kim, J., Jeong, H., and Lee, S. (200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Court Interpreting in South Korea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based on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An unpublished research report. Seoul: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of Korea.
- Kim, U. (2001). A Study on the judicial settlement of foreigners' crime. *The Chosun Law Journal* 6: 285-328.
- Krouglov, A. (1999). Police interpreting: Politeness and sociocultural context. *The Translator* 5(2): 285-302.
- Kwon, O. (2010). Study about measure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apacity of the police toward foreigner crime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s. *The Korean Journal of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17(1): 149-174.
- Lai, M. and Mulayim, S. (2013). Interpreter linguistic intervention in the strategies employed by police in investigative interviews. *Police Practice & Research* DOI: 10.1080/15614263.2013.809929.
- Lee, J. (2011). A study of legal interpreting service providers' and users' perceptions of the norms in legal interpreting.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2(3): 197-224.
- Lee, J. (2012). *Legal Interpret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Seoul: Jipmundang.
- Lee, J. (2014a). A pressing need for the reform of interpreting service at asylum settings: A case study of asylum appeal hearings in South Korea. *Journal of Refugee Studies* 27: 62-81.
- Lee, J. (2014b). A survey of police interpreters' perspectives on police interpreting: A case study of migrant women working as interpreters.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12(1): 157-186.
- Lee, J. (2015). How many interpreters does it take to interpret the testimony of an expert witness?: A case study of interpreter-mediated expert witness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28(1): 189-208.
- Lee, J., Chang, W., and Kim, J.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Interpreting System*. An unpublished research report. Seoul: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of Korea.

- Lee, J., Chang, A-I., Choi, M. and Huh, J. (2014). A study of community interpreting services for foreigners in Korea.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8(4): 167-191.
- Lim, C. H. (2008). Actual analysis and improvement methods of police investigation of foreigner crime. *Korean Academy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3: 283-332.
- Nakane, I. (2007). Problems in communicating the suspect's rights in interpreted police interviews. *Applied Linguistics* 28(1): 87-211.
- Nakane, I. (2014). *Interpreter-Mediated Police Interviews: A Discourse-Pragmatic Approach*. New York: Palgrave-Macmillan.
- Park, J. (2012). The study on th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4(2): 149-183.
- Park, S. and Park, S. (2012). 성폭행 피해자를 합의하게 만든 '황당' 사연은?, (The unbelievable case that caused sexual assault victim drop charges). *Dongaillbo*, Retrieved from <http://m.donga.com/3/03/20120416/45547928/2> on 1 August 2013.
- Russell, S. (2001). 'Let me put it simply...': the case for a standard translation of the police caution and its explanation. *Forensic Linguistics* 7(1): 26-48.
- Russell, S. (2002). "Three's a crowd": shifting dynamics in the interpreted interview. In J Cotterill (Ed.),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Basingstoke: Macmillan, 111-26.
- Yang, M. and Na, Y. (2009). A study on recent crime conditions of foreigner's and confrontation strategy. *The Police Science Journal* 4(1): 57-90.

This paper was received on 12 January 2015; received in revised form on 23 March 2015; and accepted on 8 April 2015.

---

**Author's email address**

jieun.lee@ewha.ac.kr

**About the author**

Jieun Lee is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and currently the head of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of the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legal interpreting, interpreter and translator education and her work has been published in peer reviewed journals such as *Applied Linguistics*, *Multilingua*, *Interpreting*,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the Law*, *Journal of Refugee Studies* and *Meta*.